

제231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심사안건
검 토 보 고 서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자치회 실시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행정문화국 마을자치과]



행정재경위원회 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자치회 실시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경위

- 가. 의안번호 : 제2140호
- 나. 제출자 : 금천구청장
- 다. 제출일자 : 2021.10. 7.
- 라. 회부일자 : 2021.10. 7.

2. 제안이유

주민자치회 지원 조직인 사무국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우리구 주민
자치 여건을 반영하여 현 실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주민자치회 운영원칙에 운영과 활동과정의 투명한 공개 추가
(안 제3조제5항)
- 나. 외국인에 주민자치회 위원 자격 부여(안 제10조제1항제4호)
- 다. 사무국 운영 근거 조항 신설(안 제18조제1항~제6항)
- 라. 주민자치회위원이 아닌 주민의 분과 참여 및 분과회의 의결권 보장
(안 제20조제2항)
- 마. 주민자치회 비대면 회의 근거 규정 신설(안 제21조제6항)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제28조, 제29조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5. 검토의견

가. 개정이유

- 본 조례안은 주민자치회 운영을 개선하기 위해 사무국 근거를 마련하고 우리구의 주민자치 여건과 현실정에 맞게 조례 내용을 개정하고자 구청장이 발의한 안건임.

나. 주요 내용

- 안 제3조 운영원칙에 활동과정의 투명한 공개 내용을 추가하고
- 안 제10조 위원의 자격에 외국인을 추가하고 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는 자에 대한 구체적인 명시로 위원의 자격을 보다 명확히 하였음
- 안 제18조는 기존에 간사를 둘 수 있는 규정을 사무국과 사무원을 둘 수 있는 규정으로 변경하여 주민자치회의 안정적인 운영 토대를 마련하고 주민자치회 각 분과별 사업과 활동을 촉진하는 체계를 만들고자 함.
- 안 20조에서는 주민자치위원이 아닌 주민의 분과 참여 및 의결권을 행사 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의 참여와 의견개진을 위해 자율적

인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

- 안 제21조는 주민자치회 비대면회의에 대한 근거를 신설하였음

다. 검토결과

- 주민자치회는 「지방분권법」에 의거 각 동에 설치할 수 있으며 주민자치회 구성 및 설치는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여 지방자치단체사무의 일부를 주민자치회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음
- 우리구는 2017년 전국 최초 주민자치회¹⁾를 전 동에 실시하여 서울형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을 실시 하였으며 주민자치사업단 구성과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주민이 주인이 되어 주도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시스템을 선제적으로 마련하였음.
- 본 개정안은 새롭게 신설되는 사무국에 대한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주민자치회 조직을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하고자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우리구 여건과 현실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1) 서울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실시 : 2017.5
금천구 주민자치사업단 구성 (구사업단3명, 동자치지원관 10명) : 2017.9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자치회 실시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 2017.10
주민자치회 전환 및 1기 위원 위촉(440명) : 2017.12
주민자치회 2기 구성(405명) : 2019.12

1. 관계 법령 1부.

붙임	관 계 법 령
-----------	----------------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주민자치회의 설치)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읍·면·동에 해당 행정 구역의 주민으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를 둘 수 있다.

제28조(주민자치회의 기능) ① 제27조에 따라 주민자치회가 설치되는 경우 관계 법령,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일부를 주민자치회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주민자치회 구역 내의 주민화합 및 발전을 위한 사항
2. 지방자치단체가 위임 또는 위탁하는 사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관계 법령, 조례 또는 규칙으로 위임 또는 위탁한 사항

제29조(주민자치회의 구성 등) ①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주민자치회의 설치 시기, 구성, 재정 등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참고하기 위하여 주민자치회를 시범적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